



제250회 임시회  
2006. 6.

# 전문위원 검토보고

-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# 교육사회위원회

## 검 토 보 고 서

□ 전문위원 김재준입니다.

□ 2006년 5월 30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7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된, 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.

□ 개정이유는

○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이 2006년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 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」를 이에 맞게 개정하고,

○ 그 동안 조례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개선하여 재산관리에 효율화를 기하고 자 함이며

□ 주요 내용은,

○ 안 제4조에 초·중·고등학교장 및 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

사무에 잡종재산의 관리 및 대부와 대장가격 2천만원 이하 재산의 취득·처분권을 추가하고

- 안 제5조에 충청북도공유재산심의회 위원을 부교육감과 각 국·과장으로 구성하고, 지역교육청 심의회 위원을 교육장과 각 과장 (청주교육청 각 국장) 및 각 업무담당주사, 업무담당 장학사

(청주교육청 각 과장)로 구성하며

- 안 제22조에는 교육시설의 일시 사용·수익허가와 관련한 징수 기준 금액과 징수방법, 감면규정 등을 정하고

- 안 제30조에 폐교재산 대부요율을 현재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30이상에서 1천분의 10이상으로 인하하고

- 안 제34조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시설 용도로 폐교재산을 대부 하는 경우의 연간 감액 비율을 안 제3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연간대부료의 1천분의 70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정하였습니다.

□ 다음은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.

○ 본 조례안의 개정은 「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」이 2005년 8월 4일 제정, 2006년 1월 1일 시행되고 그동안 조례운영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학교시설의 일시 사용·수익허가와 관련된 사용료 징수금액의 기준 마련과 폐교재산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등 교육인적자원부 표준 조례(안)에 따라 전면개정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되나

○ 교육인적자원부의 공유재산관리조례 표준(안) 제41조는 잡종재산의 매각시 '매각대금의 감면'을 규정하였으나 본 개정 조례안에서는 명시하지 아니한 점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

○ 안 제30조 제5항 폐교재산 대부요율을 현행 '1천분의 30이상'에서 '1천분의 10이상'으로 인하한 이유 및 근거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.

□ 이상으로, 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